

청주지방법원 2019. 9. 11 선고 2019가단137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0. 7. 2 선고 2019나15770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19. 9. 11 선고 2019가단1374 판결

전문

원고 A

피고 1. B

2. 주식회사 C

3. 주식회사 D

4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

변론 종결 2019. 8. 14

판결 선고 2019. 9. 11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

1)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그 대지를 인도하며,

2) 2014. 12. 20.부터 위 대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20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,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피고 B는 2008. 8. 27.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 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그리고 피고 B는 2009. 10. 9. 원고로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건물대지(이하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를 임대료연20,000,000, 임대차기간은 2009. 10. 9.부터 10년간으로

하되,임대료지급은 매 2년을유예하여 지급(지급시기 : 2011년부터 2020년까지)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. 한편,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, E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.

2) 그 후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6457호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대료 80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. 12. 19. 위 법원으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, 원고는 임대료 미지급 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피고 B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되었다.

[인정근거]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, 기록상 명백한 사실
나.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,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, 원고에게, 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행 소송에서 지급을 명한 임대료의 임대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. 12. 20.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20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②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.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2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정선오

별지